

등 록 금 및 정 레 회 비 규 정

규정 제 9 호

제 개	정 정	1986.	4.	16	
		1986.	7.	30	
		1987.	6.	26	
		1989.	2.	27	
		1989.	6.	2	
		1990.	3.	14	
		1990.	12.	26	
		1992.	3.	12	
		1994.	10.	25	
		1994.	11.	23	
		1995.	6.	23	
		1997.	10.	24	
		1997.	11.	21	
		1998.	6.	12	
		1999.	7.	21	
		1999.	9.	20	
		1999.	11.	10	
		2000.	7.	6	
		2000.	9.	8	
		2001.	2.	28	
		2001.	4.	11	
		2003.	3.	14	
		2003.	7.	18	
		2006.	11.	29	
		2008.	1.	1	
		2008.	8.	1	
		2009.	2.	6	
		2009.	3.	26	(2009. 4. 1 시행)
		2014.	5.	15	

등록금 및 정례회비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 11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및 정례회비의 금액과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09.3.26)

제 2 조 (정례회비) ① 정례회비는 회원이 다음과 같이 협회에 납부하여야 할 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5.15, 1997.10.24)

(월 정례회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도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	6,000원 (특수법인 및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별로 납부)

(개정 2014.5.15, 2003.3.14)

2. (삭제 1997.10.24)

3. (삭제 1997.10.24)

② 회원이 1년분 이상 정례회비를 선납할 경우 납부액의 1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정례회비를 선납한 기간 중 등록취소, 자진폐업, 임의 탈퇴하는 경우 선납 할인액을 취소하여 기준 익월분 잔여월의 정례회비 해당 금액만을 반환한다. (신설 2014.5.15)

③ 회원이 자진폐업, 임의탈퇴, 법률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납입한 정례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5)

제 2 조의2 (등록금) ①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등록금)

구 분		금 액
정회원	개인	500,000원
	법인	1,000,000원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특별회원		1,000,000원
준회원		100,000원

(개정 2014.5.15, 2009.2.6, 2008.1.1, 2006.11.29, 2000.9.8)

②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등록시 기납부한 등록금을 정회원 등록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003.7.18)

③ 정회원 및 준회원이 자진폐업, 임의탈퇴, 법률에 의하여 등록취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5)

제 3 조 (회비관리책임자) ① 등록금 및 정례회비 총괄관리책임자는 중앙회 회장이 되며, 지부관리책임자는 지부장, 지회관리책임자는 지회장이 된다.

(개정 2014.5.15, 2009.3.26)

② 등록금 및 정례회비 총괄수납책임자는 중앙회 사무총장이 되며, 지부수납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4.5.15, 2009.3.26)

③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 및 관리책임자는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4)

④ 회장은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 및 관리에 따른 금전사고 예방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 및 관리에 대한 사고보고를 접수 및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처리 및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4)

제 4 조 (수납원의 신원보증) ① 등록금 및 정례회비 등 수납업무담당자(이하

“수납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신원보증증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2009.3.26)

② 제1항의 보증보험료는 협회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한도액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4.5.15, 2009.3.26)

[제목개정 2014.5.15]

제 5 조 (수납부의 관리) ① 지부의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관리책임자는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부를 작성·관리하여 수납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4)

② 삭제 (1997.10.24)

③ 삭제 (1997.10.24)

④ 제1항의 수납부는 전자문서로 수납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4.5.15)

[제목개정 2014.5.15]

제 6 조 (회비납부월기산) 정례회비 납부는 정관 제7조에 의하여 협회에 회원 등록한 달의 익월부터 폐업한 달까지 기산한다.

(개정 2014.5.15, 2009.3.26)

제 7 조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 ① 등록금은 온라인을 통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협회계좌로 수납하며, 등록금 분납은 지로고지서, 가상계좌, 통장자동이체를 통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수납한 등록금은 협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2009.3.26)

② 정례회비는 지로고지서, 직원수납,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KT전화요금, 통장자동이체, 휴대폰요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수납방법은 사전에 수납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제료와 연계하여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09.3.26)

③ 정례회비는 월납, 분기납, 연납할 수 있다.(지로고지는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고지한다.) (개정 2009.3.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금 및 정례회비를 수납한 때에는 대행업체가 발행한 이체결과를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2009.3.26)

⑤ 등록금 및 정례회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6)

⑥ 납부한 등록금 및 정례회비가 과·오납된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환불 또는 대체납부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5.15)

제 7 조의 2 (등록금의 분납) ① 협회는 정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개월 이내로 한다.

② 분납을 신청한 자가 최종 납부기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금을 완납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4.5.15]

제 8 조 삭제 (1997.10.24)

제 9 조 삭제 (1997.10.24)

제 10 조 삭제 (2014.5.15)

제 11 조 (수납금의 관리) ①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책임자가 등록금 및 정례회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 만료 전에 수납금과 영수증 원부를 지부의 등록금 및 정례회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7.21)

② 등록금 및 정례회비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책임자가 제출한 수납금과 영수증 원부를 대조·확인하고 수납금은 지정은행에 당일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4)

제 12 조 (보고) ① 지부장은 수납한 등록금 및 정례회비 수납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중앙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2009.3.26)

② 중앙회의 등록금 및 정례회비 총괄수납책임자는 지부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2009.3.26)

제 12 조의 2 (수납실적 관리책임 및 징계절차) 회장은 정례회비 및 등록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조직장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목표대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1차 주의, 2차 경고 처분 후, 3차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신설 2009.3.26)

제 13 조 (체납 정례회비 및 등록금 납부통지) 납부 통지된 정례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월) 정례회비를 통지할 때 체납된 정례회비를 포함하여 발부하며, 분할 등록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체납 등록금을 포함하여 발부한다. (개정 2014.5.15, 2001.4.11)

제 13 조의 2 ① 삭제 (1999.7.21)

② 삭제 (1999.7.21)

제 14 조 (체납회원 및 회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회원이 정례회비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분 이상 체납할 경우 정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수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09.3.26)

② 임원, 대의원, 정·부지부장, 정·부지회장, 정·부분회장, 여성위원, 자문위원, 지도단속위원 및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09.3.26)

제 15 조 (등록금 및 정례회비의 감면 등) ① 정회원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 휴업, 폐업 및 정관 제58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기간 중 익월부터 종료일을 포함한 달까지 정례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4.5.15, 2009.3.26)

② 정회원이 중개사무소를 영위하다가 폐업한 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등록금을 완납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다만, 1986년 3월 5일 이전에 등록을 받은 자가 폐업 후 1년 이내에 신규

등록을 받았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5.15, 2001.4.11)

1. 중개업을 재개설 등록하는 경우
2. 준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개인 또는 법인으로 중별을 전환하는 경우
4.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로 중별을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법인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
6.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로 중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삭제 (2014.5.15)

④ 삭제 (2014.5.15)

⑤ 삭제 (2009.3.26)

제 16 조 삭제 (2014.5.15)

제 17 조 삭제 (2014.5.15)

제 18 조 삭제 (2014.5.15)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6. 4. 6)

제 2 조 (경과조치) ① 회원이 소속하는 지역에 지회, 분회,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장이 지정하는 지회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발족 후 최초의 회비는 회원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1986년 3월분 정례회비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6. 7.30)

제 2 조 (경과조치) ① 정례회비에 관한 규정은 1986년 7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등록금에 관한 규정은 1986년 3월 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중 개정된 등록금을 공제한 잔액은 정례회비로 대체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7.6.26)

부 칙

1. 이 규정은 198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0년 3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 중 정례회비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등록금은 199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호 : 은행지로통지서

* 별표 2호 : 우편대체납부통지서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등록금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단 회비결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제2조 제2호의 등록금액은 대의원총회 의결일 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정례회비등의 고지·징수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가 유수카드사와 약정하여 발급한 회원증 카드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및 정례 회비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제 3 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에 대한 가산금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법 제31조 제2항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하며 동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비에 대한 가산금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서식의 폐지) 이 규정 종전의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서식은 폐지한다.

제 5 조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회비』를 『등록금 및 정례회비』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정례회비가산금 징수에 관한 시행유보) 이 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비 가산금 징수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시행할 때까지 이를 유보한다.

제 3 조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제2조의 2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 미납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비결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제2조의2 등록금은 대의원총회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등록금 1999. 9.20 시행)

부 칙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2 ‘등록금’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2000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등록금 미납자 및 분할 납부자에 대한 특례 조치) 이 규정 제2조의 2와 관련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10월 31일 까지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자 중 등록금을 10만원 이상 분할 납부한 자 및 1992년 3월 13일부터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고 협회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허가자 중 2000년 12월 31일 까지 개정된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7조 및 동 규정 제2조의 2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고 회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9.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2 제2항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등록금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록금미납자에 대한 특례조치)
1992년 3월 13일부터 1999년 7월 1일 이전까지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고 협회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협회에 등록하고자 개정된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7조 및 동 규정 제2조의 2에 의거 회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 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례회비 수납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정례회비 미납자 중 2006. 12. 31 이전의 미납 정례회비는 양 협회 통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면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5.15.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 제1항에 의한 정례회비와 이규정 개정 전 등록된 준회원의 정례회비 납부의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증권]

증권번호 제()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金()원整		보험료	
보 험 기 간				
보 증 내 용				
특 별 약 관				
특 기 사 항				
[피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우리 회사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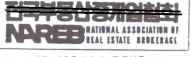
영 수 증		
NO:		
납입자	성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구 분	회 비 내 역	금 액
위 금 액 을 정 히 영 수 함 .		
년 월 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 위 :		확 인
수납인 : ㉠		
(※ 영수증 수납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별표 제1호 서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4층 TEL : 1588-0087 ☎511-8444	
입금 전용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로영수증(고객용)	
지로번호 7517978	금융결제원 승인 제 07279호 지로통지서(금융기관용)
금액 원	OCR 지로번호 7517978 금액 원
회비 등록번호 성명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금액 Code (대명ITS)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회비내역 등록번호 사 무 소 재 지	회비내역 등록번호 성명 사 무 소 재 지
* 이 장표는 인터넷(www.giro.or.kr)으로 수납 가능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TEL : 1588-008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4층 TEL : 1588-0087 ☎511-8444	
입금 전용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로영수증(고객용)	
지로번호 7517978	금융결제원 승인 제 07279호 지로통지서(금융기관용)
금액 원	OCR 지로번호 7517978 금액 원
회비 등록번호 성명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금액 Code (대명ITS)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회비내역 등록번호 사 무 소 재 지	회비내역 등록번호 성명 사 무 소 재 지
* 이 장표는 인터넷(www.giro.or.kr)으로 수납 가능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TEL : 1588-0087	

<별표 제2호 서식>



121-756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지점등록번호 1001호
TEL. 710-2246-7, 713-3794-5



요금별납

귀하

□□□□-□□□□

알리는 말씀

회원의 어려움이 남부하시든 회원은 회원의 권익보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수납업무 간소화 및 경비절약을 위하여 은행지출채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가능지역에는 우편대체납입제를 실시하오니 가까운 우체국(우편대체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수납 사항은 협회 중앙회에서 전산입력으로 영구보존 관리되고 있어오나 만약 회비 수납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납부영수증 사본을 중앙회 전산실에 송부하시어 바로 검토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 안내 처

지부명	문 의 전 화	지부명	문 의 전 화
서울 (02) 713-3794~5	충북 (0431) 83-2833		
부산 (051) 821-3345	충남 (0418) 42-7799		
대구 (053) 752-8561	전북 (0652) 82-1235		
인천 (032) 868-0882	전남 (062) 528-5430		
광주 (082) 33-6788	경북 (053) 82-8483		
대전 (042) 255-0244	경남 (0551) 95-1861		
경기 (0331) 37-3847~8	제주 (064) 53-3122		
강원 (0331) 55-1080			

우편대체납입표

가입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제 회 가입국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713-3794-5
제 회 가입국	서울마포우체국 우편 번호 121-040
계 회 번호	012245-311-2135069
금 액	전 액 입 만 천 백 십 원
납입자 주 소 성 명	회가번호
납입국기호	6 제회입자
요금코드	1 주수료 4 접수국납부인
비	회 비 내 역
고	

(제회가입국)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주 소) 1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가입국) 7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우편대체납입원부

가입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제 회 가입국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713-3794-5
제 회 가입국	서울마포우체국 우편 번호 121-040
계 회 번호	012245-311-2135069
금 액	전 액 입 만 천 백 십 원
납입자 주 소 성 명	회가번호
납입국기호	6 제회입자
요금코드	1 주수료 4 접수국납부인
비	회 비 내 역
고	

(제회가입국)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주 소) 1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가입국) 7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우편대체납입영수증

가입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제 회 가입국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713-3794-5
제 회 가입국	서울마포우체국 우편 번호 121-040
계 회 번호	012245-311-2135069
금 액	전 액 입 만 천 백 십 원
납입자 주 소 성 명	회가번호
납입국기호	6 제회입자
요금코드	1 주수료 4 접수국납부인
비	회 비 내 역
고	

(제회가입국)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주 소) 1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가입국) 7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우편대체납입통지서

가입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제 회 가입국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713-3794-5
제 회 가입국	서울마포우체국 우편 번호 121-040
계 회 번호	012245-311-2135069
금 액	전 액 입 만 천 백 십 원
납입자 주 소 성 명	회가번호
납입국기호	6 제회입자
요금코드	1 주수료 4 접수국납부인
비	회 비 내 역
고	

(제회가입국)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주 소) 1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가입국) 7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우편대체납입통지서

가입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제 회 가입국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713-3794-5
제 회 가입국	서울마포우체국 우편 번호 121-040
계 회 번호	012245-311-2135069
금 액	전 액 입 만 천 백 십 원
납입자 주 소 성 명	회가번호
납입국기호	6 제회입자
요금코드	1 주수료 4 접수국납부인
비	회 비 내 역
고	

(제회가입국) 1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주 소) 1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
(가입국) 71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34-2